

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8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이주희 · 이기현
박용갑 · 장종태 · 송재봉
남인순 · 정진욱 · 박지혜
김 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, 자산변동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,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동해 심해 시추사업(대왕고래 프로젝트) 등 국내 자원 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사전검증 절차 부실문제 및 평가 수행 기관,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·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, 평가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

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,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).

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외”를 “국내외”로, “제3항에”를 “제10조의3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평가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, 자산 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(이하 “평가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고, 평가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평가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.

1. 자원개발, 금융, 법률,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3. 자원개발, 금융, 법률,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

③ 공사의 사장은 평가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평가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4(평가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평가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평가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, 자문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평가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

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5. 평가위원이 해당 안건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심의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국내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 부의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의2(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공사는 <u>국외</u>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 전에 <u>제3항에</u>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③ <u>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,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</u> 공사에 <u>평가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,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자격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의2(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국내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제10조의3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10조의3(평가위원회의 구성 등)</u></p> <p>① <u>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,</u></p>

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(이하 “평가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고, 평가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평가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.

1. 자원개발, 금융, 법률,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3. 자원개발, 금융, 법률,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

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

③ 공사의 사장은 평가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평가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4(평가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

<신 설>

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

2. 평가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평가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, 자문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평가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5. 평가위원이 해당 안건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

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
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
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